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4. 6. 27.
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5월 31일

나. 발 의 자: 이성수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6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(2024. 6. 20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성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교직원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·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 ~ 제3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(안 제4조 ~ 제5조)
- 지원사업 및 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6조 ~ 제7조)
-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 ~ 제9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수형)

#### ○ 본 조례안은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교직원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#### 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,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, 정책개발 및 운영, 제도 개선, 재원조달 방안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였으며,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6조(지원사업)에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, 고충상담 및 심리적안정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,
- 안 제7조(위원회 설치·운영)에서는 위원회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」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(실태조사)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등의 실정을

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, 해당 실태조사에 관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#### ○ 검토 결과

- 2020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현직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9.3%가 부당한 대우 등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, 권익침해 요인으로 “보육교사를 교사로 존중하지 않는 부모들의 인식” 40.1%, “미비한 법과 제도” 25.1%, “보육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분위기” 15.1%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.
- 또한 보육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“보육교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 개선”이 39.7%, “보육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 마련”이 24.7%로 조사되었음.
- 이에 따라 서울시 8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.
- 우리 구에서는 근무환경개선비, 처우개선비 등 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,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기본 및 시행 계획의 수립·시행,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, 복리증진 등 다양한 지원 사업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,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성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5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5. .

발 의 자: 이성수, 차인영, 전승관  
임헌호 의원(4인)

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교직원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·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(안 제4조 ~ 제5조)
- 다. 지원사업 및 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6조 ~ 제7조)
- 라.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 ~ 제9조)

## 3. 제정안: “별첨”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4. 6. 3.~ 6. 8.) 결과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4.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5.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,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
2.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,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
3.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
4.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3.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,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



구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